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51

발의연월일: 2020. 7. 28.

발 의 자: 강선우 · 전혜숙 · 허 영

이용우 · 홍성국 · 양기대

이수진(비) • 김경만 • 윤미향

정청래 · 오영환 · 박찬대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(일명 햄버거병)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,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.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. 특히 햄버거 패티 등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 확대, 미생물에 오염된식육 부위의 확산, 분쇄기 등 조리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함. 이에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(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 중 "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"를 "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,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"를 향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,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"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축산물가공업"을 "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 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, 신규사업・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.

- 1.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: 2023년 1월 1일
- 2.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: 2025년 1월 1일
- 3.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: 2027년 1월 1일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: 2029년 1월 1일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혅 했 아 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 $(1) \cdot (2)$ 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 $(1) \cdot (2)$ (생략) (현행과 같음)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 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 령으로 정하는 영업자, 같은 항 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 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 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 업자-----켜야 한다. ④ ~ ⑫ (생 략) ④ ~ ①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축산물의 검사) ①・② 제12조(축산물의 검사) ①・② (생략) (현행과 같음)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③ ----축산물 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-----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 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야 하다.

④ ~ ⑨ (생 략)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